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전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 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4. 11.

시민보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4. 1.
마포구청장

2. 회부일자 : 1994. 4. 1.

3. 상정일자 :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산업과장 이영목)

가. 제출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확대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기금출납명령관 변경 지정

나. 주요골자

○ 본 기금융자대상을 종전에는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던 것을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융자 범위 확대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종전의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가. 동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융자 대상을 종전 마포구소재 중소기업에만 해당되었던 것을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 융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시책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94년도 우리구 예산중 동기금의 편성액은 4억원으로 '93년도 예산액 6억원 대비 30% 이상 감소되었는 바, 향후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홍길표 위원)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종전의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 답변(산업과장 이영목) : 많은 사고가 발생하므로 중요성 부각을 위해서 조

금 올린것 같음.

- 질의(이봉형 위원) : 중소기업이 많은데 시에서 지원된 14억원의 기금중 8억 9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시에 반납한 이유는?
- 답변(산업과장 이영목)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었으며, 신청기간을 늘리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가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제출년월일 : 1994. 4. 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대상 확대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기금출납명령관 변경 지정

2. 주요 개정골자

가. 본 기금용자 대상을 종전에는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던 것을 자치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업체로 용자 범위 확대

나. 기금출납명령관을 종전의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

3. 개정근거

- 중소기업기본법(1993. 3. 6 법률 제4541호) 제7조
- 지방자치법(1991. 12. 31 법률 제4464호) 제113조
- 지방재정법시행령(1993. 9. 23 대통령령 제13981호) 제156호
- 상공55471-1913('93. 1. 26)호 : 지시공문
- 예산11250-124('94. 1. 26)호 : 지시공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예산조치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를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항중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u>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반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출납명령관은 <u>담당과장으로</u> 하고 기금출납원은 <u>담당계장으로</u> 한다.</p>	<p>제1조(목적) (생략)</p> <p>.....<u>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의</u></p> <p>..... (생략)</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출납명령관은 <u>담당국장으로</u> 하고 기금출납원은 <u>담당계장으로</u> 한다.</p>
<p>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p> <p>1994. 4. 11. 시민보건위원회</p> <p>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2. 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 2. 22 다. 상정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위생과장 유병식) 가. 제출이유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폐적한 실내환경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p>	<p>○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및 방법 ○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가. 동조례(안)의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하며, 과태료 부과는 공중위생법 제43조 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나. 동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부과처분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폐적한 환경확보 및 급수·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구민의 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다. 향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4. 11.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2. 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 2. 22
다. 상정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위생과장 유병식)
가. 제출이유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폐적한 실내환경확보 및 급·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 공중위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및 방법

○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가. 동조례(안)의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하며, 과태료 부과는 공중위생법 제43조 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나. 동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부과처분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폐적한 환경확보 및 급수·배수시설의 청결관리로 구민의 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다. 향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